

결 정

2018 - 2019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4.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5.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주 문

東亞日報 2018년 1월 4일자 A19면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 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1월 10일자 14면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 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월 10일자 17면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 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1월 10일자 5면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 제목의 광고, 한겨레 1월 19일자 10면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5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부자가 되게 하거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황금 복돼지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려주는 황금색 복돼지가 시험합격, 매매, 취업, 사업변창, 입찰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피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송 호	정송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